

12. 住宅建設基準等に 관한 規程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199號 1991.12.31

1. 개정이유

주택의 대량생산·공급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('92.12.8. 법률 제 4,530호)로 새로이 정한 공업화주택성능인정제도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안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며,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(주차장설치기준)

주택의 규모별 (전용면적:제곱 미터)	주차장설치기준(대/제곱미터)			
	서울특 별시	직할시 및수도 권내시 지역	시지역 및 수 도권내 읍·면	기타지 역
60이하	1/100	1/115	1/135	1/160
60초과85이하	1/85	1/100	1/115	1/135
85초과135이하	1/75	1/85	1/100	1/115
135초과	1/70	1/75	1/85	1/100

2. 주요골자

가. 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행과 같이 주택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단계로 정하되, 직할시급지역의 중형주택(전용면적 25평 내외)을 기준으로 할 때 1세대 1주차장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비함.

나.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그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, 생산기준에 적합치 아니한 자재를 생산·판매한 때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, 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.

(주요처분기준)

위 반 사 항	처분기준
○ 영업정지기간중 주택자재를 생산한 때	등록말소
○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게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때	12월이내의 영업정지
○ 시설·장비를 고의로 반출·축소 또는 전용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	6월이내의 영업정지
○ 자체품질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생산한 때	3월이내의 영업정지

다. 주택의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성능 및 생산기준에 맞추어 조립식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그 인정절

차를 정함.

라. 현행규정상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주택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, 이 위원회에서 공업화주택과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: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: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